

지적과 업무계획

1.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

『토지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객관적이며 공정한 산정이 되도록 추진』.

○ 대 상 : 212,599 필지 (총 260,739필지중 81.5%)

○ 추진계획

- 토지특성조사 (2000. 1월 ~ 2월)
- 지가산정 및 검증(2000. 3월 ~ 4월)
- 지가열람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(2000. 5월 ~ 6월)
- 지가공람 · 공시(2000. 6. 30)
-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(2000. 7월 ~ 8월)
-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착수(2000. 9월 ~ 12월)

2. 개발부담금 부과

『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의거 부과가 중단되었던 개발부담금을 2000. 1. 1. 이후 인가등을 받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개발 행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부과』

○ 부과대상

- 도시계획 구역내 : 990m² 이상
- 도시계획 구역외 : 1,650m² 이상
- 5년 이내의 연접사업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개발 행위.

○ 추진계획

- 인.허가 단계부터 납부의무자 사전통지 및 현장관리로 각종 체납원인 제거

3.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

『공유토지에 대하여 관련법을 폐제하고 단독명의로 분할 및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· 부담 해소』

○ 방 법 : 토지공유자의 합의에 의한 점유상태로의 분할.

○ 사업기간 : '95. 4. 1 ~ 2000. 3. 1. (5년간)

4.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서비스 확대

○ 무지번 건축물대장 일제정비

- 지번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측량, 지번부여, 건축물대장 작성 등을 무료로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고충을 해결.
- ▶ 추진대상 : 766건
- ▶ 주민부담 경감액 : 76,600천원

○ 지적도면 일제정비

-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비 지적도면과 토지·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대사항여 정비.
- ▶ 대 상 : 260,739필지 (전 필지)
- ▶ 기 간 : '97. 1. ~ 2001. 12. 31. (5년간)

○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정비

- 건축물대장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주민의 재산관리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도모
- ▶ 『토지대장 + 건축물대장』 발급의 ONE-STOP민원처리 가능

○ 행정구역 경계 일제정비

- 행정구역경계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면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지적도면의 전산화에 대비.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
- ▶ 추진업무량 : 4개 시·군, 13읍·면·동, 126개 리·동간 경계.

○ 토지표시변경 동기촉탁

- 토지이동 (분할, 합병, 지목변경등)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동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.
- ▶ 동기촉탁으로 주민의 경제적부담 경감액 : 176백만원

5. 지가도면 제작운영

○ 현 실태

-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을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 심의조서에 당해필지 지가만 알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어 인근 지가와의 형평성 파악 곤란

○ 개선방안

- 심의 대상필지와 표준지는 물론 인근토지의 가격을 한눈에 알수 있도록 전산화된 지가도면 제작
 - ▶ 기존 전산도면에 공시지가 입력

○ 기대효과

- 합리적인 지가산정으로 대주민 행정신뢰도 제고

6. 토지이동정리의 ONE - STOP 처리

○ 현 실태

-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이동은 민원인이 측량접수 성과도 수령, 토지이동정리 신청시 관공서를 반복방문하게 되어 불편 초래

○ 개선방안

- 당초 측량 접수시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면
-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시에서 직접 토지이동상태를 정리하여 등기 촉탁함으로서
- 1회 방문으로 등기문서가 민원인에게 도착토록 개선

○ 기대효과

- 시민에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참봉사행정 구현